

# 醫 療 保 險 法

1963年 12月 16日

法律 第 1623 號

## 改正 1970. 8. 7 法律 第 2,228 號

第1條 (目的) 이 법은 勤勞者, 公務員, 軍人 自營者 및 그 家族의 疾病, 負傷, 死亡 또는 分娩에 대하여 保險給與를 行함으로써 國民의 醫療保障制度를 확립 하고 健康을 增進하여 國民의 經濟的 生活安定과 福 祉生活향상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用語의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 義는 다음과 같다.

1. “勤勞者” 또는 “賃金”이라 함은 勤勞基準法 第14 條와 第18條에 規定한 勤勞者 또는 賃金を 말한다.
2. “公務員”이라 함은 公務員年金法 第2條 第1號에 規定한 公務員을 말하고 “軍人”이라 함은 軍人年金 法 第2條의 規定에 依한 中士이상의 軍人을 말한다.
3. 公務員 또는 軍人의 俸給이라 함은 公務員年金法 第2條 第4號와 軍人年金法 第3條 第1號에 規定 한 俸給을 말한다.
4. “自營者”라 함은 勤勞者, 公務員 또는 軍人을 除 外한 一定한 所得을 가지는 모든 國民을 말한다.
5. “扶養家族”이라 함은 被保險者의 男者 60歲以上, 女子 55歲以上인 直系尊屬, 配偶者(事實上 婚姻관 계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및 未成年子女와 學生인 子女로서 그 被保險者의 收入에 의하여 生計를 유 지하는 者를 말한다.
6. “保險者”라 함은 이 법에 의한 醫療保險事業의 經 營主로서 保險料의 徵收와 保險給與를 행하는 者를 말한다.
7. “醫療要員”이라 함은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 醫療機關에 종사하는 者로서 醫療法 第2條의 醫療 業者 및 藥事法 第2條 第2項의 藥師를 말한다.
8. “保險事故”라 함은 다음의 事故를 말한다.

가. 公務員 및 勤勞者에 있어서는 公務 또는 業務 이외의 疾病, 負傷, 死亡 또는 分娩.

나. 自營者와 被保險者의 家族에 있어서는 業務上

業務외의 疾病, 負傷, 死亡 또는 分娩.

9. “機關長”이라 함은 당해 機關의 豫算을 執行하는 長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를 말한다.

第3條 (時効) 保險料 기타 이 법에 의한 徵收金を 徵收하거나 返還을 받을 權利 및 保險給與를 받을 權 利는 2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効가 完成한다.

第4條 (申告義務) ①保險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 에 의하여 被保險者를 사용하는 事業主 또는 機關長 에게 그 사용하는 被保險者의 變動 및 賃金과 기타 醫療保險事業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을 申告하게 하거 나 관계文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保險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被保險者 또는 保險給與를 받을 者에게 保險給與를 위하여 必 要한 申告를 하게 하거나 관계文書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第5條 (檢査·質問·監督) ①保健社會部長官은 必要 한 때에는 被保險者를 사용하는 事業主에게 그 사용 하는 被保險者의 異動 및 賃金 또는 保險給與나 保險 料에 관한 보고 또는 關係文書의 提出을 命하거나 관 계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事業所나 事業場에 出入하 여 關係人에 대하여 必要한 質問을 하게 하거나 관계 文書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保健社會部長官은 必要한 때에는 被保險者 및 그 扶養家族을 診療한 保險醫療機關의 長 또는 醫療要員 에게 그 行한 診療 또는 藥劑의 支給에 관한 보고 또 는 診療簿 기타 關係文書의 제출을 命하거나 關係公 務員으로 하여금 診療簿 기타 關係 文書를 檢査하게 하거나 必要한 質問을 하게 할 수 있다.

③保健社會部長官은 必要한 때에는 療養給與 또는 療 養費의 支給을 받은 被保險者 또는 被保險者이었던 者에게 당해 保險者의 內容에 관한 보고를 命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必要한 質問을 하게 할 수 있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경우에 關係 公務員은 그 權

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⑤保健社會部長官은 必要한 때에는 當該 醫療保險組合의 運營을 指導監督하기 위하여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醫療保險監督官을 派遣 常駐시킬 수 있다.

第6條 (權限의 委任) 保健社會部長官은 依法에 의한 그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7條 (適用對象) ①勤勞者, 公務員 및 軍人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醫療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2月未滿의 期間을 定하여 臨時로 사용되는 者.
2. 日僱勤勞者 (3月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者는 제외한다).
3. 季節的 業務에 사용되는 者 (6月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者는 제외한다).
4. 기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

②前項 但書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와 自營者도 依法에 의한 醫療保險에 加入할 수 있다.

第8條 (被保險者의 資格取得時期) ①醫療保險組合이 새로 設立되는 경우에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醫療保險組合의 設立登記를 完了한 날 醫療保險組合이 合併되는 경우에는 그 合併登記를 完了한 날로부터 被保險者의 資格을 取得한다.

②第14條 또는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醫療保險이 實施되고 있는 事業所에 사용되는 勤勞者는 그 事業所에 사용되게 된 날로부터 被保險者의 資格을 取得한다.

③公務員과 軍人은 醫療保險에 加入되는 날로부터 被保險者의 資格을 取得한다.

④自營者는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組合에 加入한 날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者에게 醫療保險 加入이 承認된 날로부터 被保險者의 資格을 取得한다.

第9條 (被保險者의 資格喪失) ①被保險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그 事由가 發生한 날의 翌日 부터 被保險者로서의 資格을 喪失한다.

1. 死亡한 때
2. 당해 事業所에서 解雇된 때
3. 당해 事業所가 廢業된 때
4. 任意加入한 被保險者가 醫療保險組合으로 부터 脫退한 때 또는 保險料를 保險者가 定하는 期日내에 納付하지 아니 한 때

5. 公務員 또는 軍人인 被保險者가 退職한 때

6.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被保險者의 醫療保險組合이 解散된 때

第10條 (被保險者의 資格確認) ①被保險者의 資格取得과 喪失은 保險者의 확인에 의하여 効力を 發生한다. 다만,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資格喪失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②被保險者 또는 被保險者이었던 者는 언제든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資格의 取得 또는 喪失에 관한 확인을 保險者에게 請求할 수 있다.

③保險者는 前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받은 경우에 그 請求가 事實이 아닌 때에는 理由書를 添附하여 返戻하여야 한다.

④保險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者의 資格의 取得 또는 喪失에 관하여는 第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에 의하거나 그 職權으로 確認한다.

⑤保險者는 被保險者의 資格의 取得 또는 喪失에 관한 확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本人에게 通知하고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公告하여야 한다.

⑥保險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被保險者에게 被保險者證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第11條 (保險者) ①醫療保險의 保險者는 政府 또는 醫療保險組合으로 한다.

②政府는 公務員과 軍人, 醫療保險組合은 勤勞者와 自營者의 醫療保險事業을 管掌한다. 다만, 海外 또는 駐韓外國機關에서 就業하는 勤勞者의 醫療保險事業은 政府가 管掌한다.

第12條 (醫療保險金庫) ①政府가 管掌하는 醫療保險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專擔機關으로서 中央 및 地方에 醫療保險金庫를 둔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保險金庫의 組織과 運營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3條 (醫療保險組合의 組織과 法人格) ①第14條 및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醫療保險組合은 被保險者 및 그 被保險者를 使用する 事業主로 組織하고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醫療保險組合은 被保險者 만으로 組織한다.

②醫療保險組合은 法人으로 한다.

③醫療保險組合에 관하여는 依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中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14條 (強制設立) ①第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를 使用하는 事業主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定款을 作成하고 保健社會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指定된 期間內에 醫療保險組合을 設立하여야 한다.

②保健社會部長官은 必要한 때에는 2個이상의 事業主

에게 醫療保險組合을 共同으로 設立하게 할 수 있다.

第15條 (任意包括設立) ①第7條第1項의 規定을 適用받지 않는 勤勞者를 사용하는 事業主는 前條에 準하여 醫療保險組合을 設立할 수 있으며 被保險者가 될 勤勞者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②前項의 경우에 當해 營業所의 勤勞者 2分の 1이상 이 同意하였을 때에는 그 事業所의 모든 勤勞者가 同意한 것으로 본다. 다만, 2分の 1에 未達하는 경우에는 加入同意者에 限하여 醫療保險組合을 設立한다.

③2이상의 事業主가 共同으로 醫療保險組合을 設立하는 경우에는 前項의 同意는 各事業所마다 얻어야 한다.

第16條 (自營者의 任意設立) ①自營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組合員이 될자의 同意를 받아 定款을 作成하고 保健社會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醫療保險組合을 設立할 수 있다.

②前項에 規定한 醫療保險組合의 組織과 運營에 관하여는 勤勞者의 醫療保險組合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17條 (自營者의 個別加入承認權) 自營者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既存 保險者의 被保險者가 되거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當해 保險者에게 醫療保險加入 申請을 할 수 있으며 當해 保險者는 自營者의 個別加入을 承認할 수 있다.

第18條 (定款) ①醫療保險組合은 그 定款에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組合의 名稱
2. 目的과 事業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4. 醫療保險組合이 設立되어 있는 分事務所의 名稱 및 所在地
5. 運營委員에 關한 事項
6. 代表者와 任員에 關한 事項
7. 財産의 管理와 處分에 關한 事項
8. 保險料와 會計에 關한 事項
9. 定款變更에 關한 事項
10. 公告의 方法
11. 解散에 關한 事項
12. 기타 醫療保險組合의 運營에 關한 重要事項

②定款의 變更은 保健社會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19條 (醫療保險組合의 成立) ①醫療保險組合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主된 事業所의 所在地에서 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②醫療保險組合이 成立한 때에는 事業主 및 그 事業所에 사용되는 被保險者는 當해 醫療保險組合의 組合員이 된다.

第20條 (類似名稱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醫療保險組合이 아니면 醫療保險組合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사용할 수 없다.

第21條 (醫療 및 福祉施設) ①保險者는 被保險者 및 그 扶養家族의 疾病이나 負傷의 療養 또는 健康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必要한 醫療 또는 福祉施設을 設置하고 運營할 수 있다.

②保險者는 그 保險事業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限하여 被保險者 및 그 扶養家族이 아닌 者로 하여금 前項의 施設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保險者는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을 이용하는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④保健社會部長官은 醫療保險事業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醫療保險組合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 또는 福祉施設을 設置하고 運營하게 할 수 있다.

第22條 (報告와 檢査) ①保健社會部長官은 醫療保險組合에 대하여 그 醫療保險事業에 關한 보고를 命하거나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事業 또는 財産狀況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第5條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23條 (職務의 代行) ①醫療保險組合의 任員 全員の 事故로 인하여 保險給與 기타 그 職務를 執行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保健社會部長官은 그 任員의 職務를 代行하는 者를 指名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職務代行에 必要한 經費는 當해 醫療保險組合의 負擔으로 한다.

第24條 (決議의 取消등과 定款變更命令) ①保健社會部長官은 醫療保險組合의 決議 또는 그 任員의 行爲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定款에 違反하거나 또는 組合員의 利益을 害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決議를 取消하거나 改善을 命할 수 있다.

②保健社會部長官은 醫療保險組合의 定款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거나 組合員의 利益을 害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變更을 命할 수 있다.

第25條 (醫療保險組合의 解散) ①保健社會部長官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定款에 違反하거나 또는 組合員의 利益을 害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醫療保險組合의 解散을 命할 수 있다.

②第15條 또는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醫療保險組合은 當해 被保險者의 4分の 3이상의 決議에 의한 解散要求가 있을 때에는 保健社會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醫

療保險組合을 解散할 수 있다.

第26條 (運營委員會) ①醫療保險組合에 運營委員會를 둔다.

②運營委員會는 運營委員 9人以上 15人以下로 構成한다. 다만, 運營委員의 3分の 1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公益委員이어야 한다.

③運營委員會의 組織과 運營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7條 (運營委員會의 決議事項) ①運營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決議한다.

1. 豫算과 決算에 관한 事項
2. 事業報告에 관한 事項
3. 財産의 管理와 處分에 관한 事項
4. 定款의 變更에 관한 事項
5. 任員의 任免에 관한 事項
6. 任職員의 報酬에 관한 事項
7. 保險料의 徵收와 保險給與에 관한 事項
8. 醫療保險組合의 運營에 관한 事項
9. 기타 定款으로 정하는 事項

第28條 (委任) 이 法에 規定하는 외에 醫療保險組合 및 그 運營委員會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9條 (中央聯合會) ①醫療保險組合의 相互 親善과 運營의 合理化를 위하여 醫療保險組合 中央聯合會를 둘 수 있다.

②醫療保險組合 中央聯合會의 組織과 運營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0條 (醫療保險審議委員會) ①保健社會部長官의 諮問에 응하여 醫療保險事業에 관한 主要事項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保健社會部에 醫療保險審議委員會를 둔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保險審議委員會에 常任委員會를 둔다.

③醫療保險審議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1條 (保險給與 期間, 範圍 및 種類등) ①保險給與는 被保險者의 資格을 取得한 날로부터 그 資格을 喪失한 날까지 행한다.

②保險給與는 被保險者와 그 扶養家族의 保險事故에 對하여 행한다.

다만, 軍人인 被保險者에 있어서는 그 扶養家族에 對하여서만 保險給與를 행한다.

③保險給與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療養給與
2. 葬祭給與

3. 分娩給與

④保險者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定給與의 必要한 給與를 할 수 있다.

第32條 (療養給與) 被保險者나 그 扶養家族의 疾病 또는 負傷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全部 또는 一部 療養給與를 한다.

1. 診 療
2. 藥劑 또는 治療材料의 支給
3. 處置 手術 기타의 治療
4. 醫療施設에 이 收容
5. 看 護
6. 移 送

第33條 (被保險者의 一部負擔) 前條第1號 내지 第4號의 療養給與를 받는 者에 대하여 療養을 행하는 保險醫療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費用의 一部를 徵收할 수 있다.

第34條 (療養給與期間) 療養給與의 期間은 6月이내로 한다.

第35條 (療養費의 支給) ①保險者는 療養給與를 하기 곤란할 때 또는 被保險者나 그 扶養家族이 緊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事由로 인하여 保險醫療機關이외의 醫療施設 또는 藥局이나 기타의 者로 부터 診療 또는 藥劑등을 받았거나 應急治療를 받은 경우에 保險者가 그 措置를 부득이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療養給與에 가름하여 療養費를 支給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하는 療養費의 額은 그 療養에 所要되는 費用 또는 所要되는 費用에서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療養給與를 받은 者로부터 徵收하는 金額을 控除한 金額으로 한다.

第36條 (葬祭給與) ①被保險者 또는 그 扶養家族이 死亡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葬祭를 행할 扶養家族 또는 被保險者에게 葬祭給與를 支給한다.

②被保險者 또는 그 扶養家族이 死亡한 경우에 前項의 規定에 의한 葬祭給與를 받을 者가 없을 때에는 그 葬祭를 행한 者에게 葬祭給與의 金額의 범위안에서 그 葬祭에 所要되는 費用에 상당하는 金額을 支給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第3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娩給與를 받을 者가 分娩으로 因하여 死亡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37條 (分娩給與) ①被保險者 또는 그 配偶者가 分娩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分娩給與를 支給한다.

②被保險者 또는 그 配偶者가 保險醫療機關에서 分娩

한 때에는 所要된 費用을 控除하고 그 殘額을 分娩給與로서 支給한다.

③妊娠 6月以後의 分娩인 때에는 流産 早産 또는 死産에 불구하고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分娩給與를 支給한다.

④被保險者가 資格을 喪失한 後 4月이내에 當해 被保險者이었던 者 또는 그 配偶者가 分娩한 때에는 그 資格喪失 전 1年以上 被保險者 이었던 경우에 限하여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分娩給與를 支給한다.

**第38條 (保險給與의 制限)** ①保險者는 保險給與를 받을 수 있는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期間中 疾病, 負傷 또는 分娩에 關하여 保險給與를 하지 아니한다.

1. 國外에 旅行中인 때
2. 矯導所 기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에 收容中인 때

②保險者는 保險給與를 받을 수 있는 者가 다른 法令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이 法에 規定한 것과 同一한 保險給與를 받은 때에는 이 法에 의한 保險給與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保險者가 이 法에 의한 保險給與에 未達할 때에는 그 未達하는 部分에 相當한 金額을 保險給與로서 支給한다.

**第39條 (第三者에 대한 保險代位等)** ①保險者는 保險給與의 事由가 第三者의 行爲로 因하여 발생한 경우에 保險給與를 한 때에는 그 給與의 限度안에서 當해 保險給與를 받은 者의 權利를 取得한다.

②前項의 경우에 保險給與를 받은 者가 그 第三者로부터 이미 損害賠償을 받은 때에는 保險者는 그 받은 賠償額의 限度안에서 保險給與를 하지 아니한다.

③保險者는 第三者의 行爲로 인하여 발생한 保險事故에 대하여 保險給與를 행한 경우 그 保險給與를 받은 者가 同一保險事故에 대하여 第三者로부터 損害賠償을 받은 때에는 그 給與額에 相當하는 金額을 保險給與를 받은 者로부터 求償할 수 있다.

**第40條 (受給權의 保護)** 保險給與를 받을 權利는 讓渡 또는 押留할 수 없다.

**第41條 (租稅 기타 公課金の 免除)** 保險給與로서 支給된 金品에 대하여는 租稅 減免規制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諸稅를 免除하고 기타 公課金を 賦課할 수 없다.

**第42條 (保險醫療機關)** ①被保險者 또는 그 扶養家族에 대한 療養給與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醫療機關에서 행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한 保險醫療機關은 醫療法 第8條

의 規定에 의한 醫療機關中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社會部長官이 指定한다.

③保健社會部長官은 政府가 管掌하는 醫療保險의 被保險者 및 그 扶養家族의 療養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保健所 및 保健支所를 保險醫療機關으로 指定할 수 있다.

**第43條 (保險醫療機關의 指定取消의 要求)** ①保險醫療機關은 인계든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社會部長官에게 그 指定의 取消를 要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取消의 要求는 保險醫療機關으로서의 業務를 폐지하고자하는 날로부터 30일전에 하여야 한다.

②保健社會部長官은 前項의 規定에 의한 要求를 받은 때에는 그 要求를 받은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當해 保險醫療機關에서 療養給與를 받고 있는者의 事情을 察작하여 그 指定取消日字를 決定하고 지체없이 이를 그 要求人과 관계保險者에게 통고 하여야 한다.

**第44條 (保險醫療機關의 指定取消)** 保險社會部長官은 保險醫療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指定을 取消할 수 있다.

1. 當해 保險醫療機關에 從事하는 醫療要員이 그 任務에 違反한 때 다만, 그 違反을 방지하기 위하여 當해 保險醫療機關의 長이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當해 保險醫療機關의 長 또는 醫療要員이 第5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거나 虛偽 보고를 하거나 관계 公務員의 檢査 또는 質問을 거부 妨害 또는 忌避하거나 虛偽의 答辯을 할 때

3. 不正한 方法으로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與에 관한 費用을 청구할 때

4. 療養給與를 행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이法 또는 이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第45條 (診療報酬)** ①保險醫療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當해 保險醫療機關에서 행한 療養給與에 所要된 費用(이하 "診療報酬"라 한다)을 保險者에게 청구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診療報酬의 額은 療養給與에 所要된 費用의 額에서 當해 保險醫療機關이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療養給與를 받은 者로부터 徵收하는 金額을 控除한 金額으로 한다.

③保險者는 前項의 規定에 의한 診療報酬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그 診療報酬를 支給하여야 한다.

**第46條 (國庫補助)** 國家는 每年度 豫算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醫療保險事業의 事務

執行에 所要되는 費用의 全額을 補助하고 그 保險給與에 所要되는 費用은 그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第47條 (保險料) ①保險者는 醫療保險事業에 必要한 經費에 負擔하기 위하여 保險料를 徵收한다.

②公務員, 軍人 및 勤勞者인 被保險者의 保險料의 金額은 每月 그 俸給額 및 賃金額에 保險料率을 乘한 金額으로 한다.

③前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料率은 被保險者의 月俸給額 및 賃金額의 100分의 2이상 100分의 8이내의 범위 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保險者가 정하고 保健社會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④自營者인 被保險者의 保險料의 金額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保險者가 정하고 保健社會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48條 (保險料의 分擔等) ①勤勞者인 被保險者의 保險料는 被保險者와 그 被保險者를 사용하는 事業主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分擔한다.

②自營者인 被保險者의 保險料는 前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를 가름할 수 있는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分擔할 수 있다.

③公務員과 軍人의 保險料는 國庫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分擔하여야 한다.

第49條 (保險料納付 義務者) ①前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料는 被保險者를 사용하는 事業主가 納付의 義務를 진다.

②自營者인 被保險者의 保險料는 각 被保險者가 納付의 義務를 진다.

③公務員 또는 軍人인 被保險者의 保險料는 各 被保險者의 所屬機關의 支出官이 納付의 義務를 진다.

第50條 (保險料納付期日 및 過納의 處理) ①前條 第1項 또는 第3項에 規定한 每月의 保險料는 翌月 末日까지 納付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保險料 納付에 있어서 過課納이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精算한다.

第51條 (保險料納期前 徵收) 第49條第1項 또는 第2項에 規定한 保險料納付義務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納期 일지라도 保險料를 徵收할 수 있다.

1. 國稅, 地方稅 기타 公課金의 滯納으로 인하여 滯納處分을 받을 때

2. 被保險者를 사용하는 事業所가 폐지되거나 또는 그 法人이 解散된 때

3. 強制執行을 받은 때

4. 破産宣告를 받은 때

5. 競賣가 開始한 때

第52條 (保險料등의 督促과 延滯金) ①保險者는 保險

料 기타 徵收金을 納付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期限을 정하여 督促할 수 있다. 다만, 前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料를 徵收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保險者가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督促을 할 때에는 督促狀을 發付하여야 한다. 이 경우 督促狀에 정하는 納付期限은 적어도 督促狀을 送達받은 날로부터 10日 이상의 餘裕가 있어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督促을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延滯金을 徵收할 수 있다.

第53條 (會計) 政府가 管掌하는 醫療保險事業의 豫算會計는 特別會計로 하고 醫療保險組合의 財務會計는 事業主의 企業會計와 分離하여 計理한다.

第54條 (醫療保險審査委員會) ①保險料 기타 徵收金의 賦課 및 徵收被保險者의 資格 또는 保險給與 등에 관한 處分에 대한 異議를 審査하기 위하여 保健社會部에 中央醫療保險審査委員會를, 保健社會部長官이 必要하다고 인정하는 地域에 地方 醫療保險審査委員會를 둔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各 醫療保險審査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5條 (保險給與 등에 관한 審査의 請求) ①保險料 기타 徵收金의 賦課 및 徵收 被保險者의 資格 또는 保險給與 등에 관한 處分에 異議가 있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處分이 있는 날로부터 60日 내에 地方醫療保險審査委員會에 그 決定에 대하여 다시 異議가 있는 者는 그 決定書의 送達을 받은 날로부터 30日 내에 中央醫療保險審査委員會에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②地方醫療保險審査委員會 및 中央醫療保險審査委員會는 異議에 대한 決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決定書를 관계 當事者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地方醫療保險審査委員會 및 中央醫療審査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審査할 때에는 관계 當事者를 委員會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正當한 事由없이 그 출석 요구에 2回 以上 不應하거나 意見書를 제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中央醫療保險審査委員會의 再審決定에 異議가 있는 者는 行政訴訟法 第2條第1項 但書와 同法 第5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再審決定書의 送達을 받은 날로부터 30日내에 行政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⑤第1項 및 前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內에 再審을 請求하지 아니하거나 行政訴訟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決定 또는 再審決定은 확정된다.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 및 再審의 請求는 時効

中斷에 있어서 이를 裁判上의 請求로 본다.

第56條 (罰則) 정당한 事由없이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事業主에 대하여서는 그 違反한 期間中 그가 負擔하여야 할 保險料額의 3배에 相當하는 金額을 罰金에 處한다.

第57條 (同前)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萬 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條 또는 第5條 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의 申告 또는 보고를 하거나 관계 文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公務員의 質問에 答辯을 拒否하거나 虛偽의 答辯을 하거나 또는 관계 公務員의 檢査를 拒否, 방해 또는 忌避한 者

2. 第20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第58條 (同前) 醫療保險組合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0萬 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의 보고를 하거나 관계 公務員의 檢査를

拒否, 방해 또는 忌避한 때

2.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違反한 때

第59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57條 및 第58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각 本條의 刑을 科한다.

第60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附 則

①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이 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醫療保險組合에 해당하는 既存 醫療保險組合은 이 法에 의하여 成立된 것으로 본다.

③ (同前) 醫療保險金庫가 發足하기까지는 公務員과 軍人에 대한 醫療保險事業은 保健社會部長官이 行한다.

## 齒 協 會 誌 寄 稿 案 內

### 投 稿 要 領

① 原稿磨勘日字: 每月 10日

② 보 낼 곳: 本協會誌編輯室

(서울中區 仁峴洞 1街 31의 8號

現代醫學社內 26-8398)

③ 掲載料 內容

平 版: 頁當 1,200원

表英文版: 頁當 1,400원

圖 案: 枚當 200원

銅 版: 坪當 40원(普通 寫  
眞 1枚가 9坪임)

別 冊: 部當 30원(50部  
未滿은 40원)

印 刷: 臺當 2,000원

其他 特殊印刷 및 特殊組版을  
要할 때는 그 實費를 寄稿者가 負  
擔함.

④ 掲載順序 및 月號는 學術委員會  
에서 決定함.

⑤ 寄稿時는 아래 事項을 明示바람.

(가) 別冊所要 日字

(나) 別 冊 部 數

(다) 組版 및 印刷上 特別히 注意  
를 要하는 事項.

其他 學會誌 및 一般印刷 問議는

(26-8398) 現代醫學社로